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 공장, 산업입지및 개발에관한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 용지, 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특별조치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및 지방자치단체가 조성 한 농공단지, 지방자치단체가 유치한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제23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 주거용건물이 있는 토지의 사용요율 또는 대부요율은 1,000분의 25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대부요율 또는 사용요율의 변경에 따른 적용례)

제23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조례 시행후 부과되는 연간대부료 또는 사용료부터 적용 한다.